

## [학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5조(수업연한)	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건축과, 뉴케이팝학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	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<b>건축인테리어과</b> , 뉴케이팝학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	학과개편내용 적용
제18조(편입학)	①전문학사과정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편입학 시기는 2학년 1학기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외의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③편입학의 모집인원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 여석으로 한다. ④편입학 졸업요건은 편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칙 제34조의 졸업기준을 적용한다.	① <현행과 동일> ② <b>편입학의 모집인원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 여석으로 한다.</b> ③ <b>편입학 시기, 인원, 자격,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b> ④ <현행과 동일>	편입학전행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사항에 대해 규정 반영
제24조(제적)	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 1.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. ~ 3. <삭제> 4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.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. 타교에 입학한 자(이중학적을 가진 자) 7.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확인 보고된 자 8.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자격이 상실된 자 9. 계약학과 학생으로 재직기준을 상실한 자 10. <신설>	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 3.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4. ~ 3. <삭제> 4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.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. 타교에 입학한 자(이중학적을 가진 자) 7.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확인 보고된 자 8.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자격이 상실된 자 9. 계약학과 학생으로 재직기준을 상실한 자 10. <b>2회 연속 유급인 자</b>	성적제적기준 추가
제25조(교육과정)	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, 학점 배정기준은 교양교과 2년제 최대 6학점, 3년제 최대 8학점으로 하며, 전공교과 2년제 최대 64학점, 3년제 최대 92학점으로 하고 전공교과 시수의 50%이상은	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, 학점 배정기준은 교양교과 2년제 최대 6학점, 3년제 최대 8학점으로 하며, 전공교과 2년제 최대 64학점, 3년제 최대 <b>97학점</b> 으로 하고 전공교과 시수의 50%이상은	3년제 학과의 최종학점 편성에 맞게 학점수정

	<p>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~⑤ 생략</p>	<p>실험실습으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~⑤ 생략</p>					
제57조(직제)	<p>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, 입학학생처, 산학협력처, 기획처, 사무처를 둔다.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	<p>① 본 대학에는 교무처, 입학학생처, 산학협력처, 기획처, 사무처, <u>국제교류처</u>를 둔다.</p> <p>②~④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신설부처 추가				
제58조(부속기관)	<p>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서관</li> <li>2. 전산정보원</li> <li>3. <u>국제교류협력원</u></li> <li>4. <u>예비군대대</u></li> <li>5. 교수학습지원센터</li> <li>6. 원격교육지원센터</li> <li>7. 학사학위운영센터</li> <li>8. 취창업지원센터</li> <li>9. 현장실습지원센터</li> <li>10. 공간활용센터</li> <li>11. 선교지원센터</li> <li>12. 인권센터</li> <li>13. 미디어센터</li> <li>14. ~ 17. <u>신설</u></li> </ol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서관</li> <li>2. 전산정보원</li> <li>3. <u>&lt;삭제&gt;</u></li> <li>4. <u>&lt;삭제&gt;</u></li> <li>5. 교수학습지원센터</li> <li>6. 원격교육지원센터</li> <li>7. 학사학위운영센터</li> <li>8. 취창업지원센터</li> <li>9. 현장실습지원센터</li> <li>10. 공간활용센터</li> <li>11. 선교지원센터</li> <li>12. 인권센터</li> <li>13. 미디어센터</li> <li>14. <u>장애학생지원센터</u></li> <li>15. <u>지산학협력센터</u></li> <li>16. <u>국제인재개발원</u></li> <li>17. <u>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</u></li> </ol> <p>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신설 및 폐지 기관 수정				
부칙	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승강기학과는 산업장비운용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5학년도 말까지 미졸업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</td> </tr> <tr> <td>승강기학과</td> </tr> </table>	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	승강기학과	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<u>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 특별전과를 할 수 있다.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</td> </tr> <tr> <td>승강기학과</td> </tr> </table>	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	승강기학과	모집단위폐지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으로 수정
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							
승강기학과							
모집단위 폐지학과(전공)							
승강기학과							
부칙	신설	(전공트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학과 개편으로 종전학과 재적생은	전공트랙운영학과에 대한 경과조치				

		<p>2026년 2월 말일까지 미 졸업 시 변경된 전공트랙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전공 소속으로 본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8 302 1220 555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data-bbox="758 302 1220 347">학과개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758 347 981 425" rowspan="2">경영학과</td> <td data-bbox="981 347 1220 380">일반경영전공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81 380 1220 425">스포츠경영전공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58 425 981 555" rowspan="3">스포츠지도학과</td> <td data-bbox="981 425 1220 459">스포츠지도전공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81 459 1220 492">무도전공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81 492 1220 555">예술전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학과개편		경영학과	일반경영전공	스포츠경영전공	스포츠지도학과	스포츠지도전공	무도전공	예술전공	적용
학과개편												
경영학과	일반경영전공											
	스포츠경영전공											
스포츠지도학과	스포츠지도전공											
	무도전공											
	예술전공											

## [학칙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형	개 정 안	개정사유
제6조(편입학)	<p>①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의 편입학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.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적 학교 졸업(재적, 수료)증명서와 성적증명서(백분율기재) 각1통</p> <p>2. 기타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	<p>①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의 편입학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.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3. 전적 학교 졸업(재적, 수료)증명서와 성적증명서(백분위기재) 각1통</p> <p>4. 기타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</p> <p>②~④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우리대학의 성적은 백분위점수를 적용하므로 편입학 성적에 백분위점수로 수정
제13조의2(제적)	<p>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.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유급대상자 중 소정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</p> <p>3.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자격이 상실된 자</p> <p>4. 계약학과 학생으로 재직기준을 상실한 자</p> <p>②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할 경우 처리 후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.</p> <p>③ 학칙에 의한 제적 의결은 총장의 결재로 대처할 수 있다.</p>	<p>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.</p> <p>1. &lt;삭제&gt;</p> <p>2. 유급대상자 중 소정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</p> <p>3. 외국인유학생 중 체류자격이 상실된 자</p> <p>4. 계약학과 학생으로 재직기준을 상실한 자</p> <p><u>5. 2회 연속 유급인 자</u></p> <p>②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할 경우 처리 후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.</p> <p>③ 학칙에 의한 제적 의결은 총장의 결재로 대처할 수 있다.</p>	성적제적 기준 추가
제18조의2(수강신청제한)	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부모가 담당하는 해당 강의에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.	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가족인 경우 해당 강의에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.	관련 규정, 변경사항 반영
제24조(타과교과목수강)	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타 학과 수강 시 이수 구분은 일반적으로 하며, 일반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모집정지 학과 또는 대체과목 미지정 필수 과목에 한하여 수강 신청시 해당 학과 학과장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수 구분이 교양일 경우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.	<p>① 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타 학과 수강 시 이수 구분은 일반적으로 하며, 일반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모집정지 학과 또는 대체과목 미지정 필수과목에 한하여 수강 신청시 해당 학과 학과장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수 구분이 교양일 경우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.</p> <p>② <u>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·융합하여</u></p>	조항 신설, 전공인정기준 추가

		<u>편성된 과목특성이 융합교과목인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인정한다.</u>	
제33조(출석)	<p>① 한 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"F"로 처리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(주말 및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)</p> <p>1~8. &lt;선략&gt;</p> <p>9. 운동부 및 그에 준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<u>수업일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0. 신설</p>	<p>① 한 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"F"로 처리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(주말 및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)</p> <p>1~8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9. 운동부 및 그에 준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<u>대회참가, 전지훈련 등 운동과 관련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</u>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10. 외국인유학생 중 비자발급지연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.</p>	<p>운동선수 출석인정기준의 명확화와 외국인유학생의 비자발급이슈에 관한 인정기준 추가</p>
제40조	<u>답안지보관</u>	<u>성적자료보관</u>	조제목 변경
제40조(성적자료보관)	<p><u>시험답안지</u>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한 <u>2년간</u>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전임교원(겸임 및 초빙교원 등)의 담당교과목의 <u>시험답안지</u>는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<u>2년간</u>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<u>성적자료</u>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한 <u>3년간</u>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전임교원(겸임 및 초빙교원 등)의 담당교과목의 <u>성적자료</u>는 <u>학과</u>에서 <u>3년간</u>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교육부 문서보관가이드에 따라 보관기한 수정 및 비전임교원 시험자료 보관부서 변경</p>
제50조(유급)	<p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.</p> <p>1. 동일 학년에서 계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</p> <p>2. 졸업 및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</p>	<p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.</p> <p>1. 동일 학년에서 계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(<u>단, 졸업학년은 제외</u>)</p> <p>2. 졸업 및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</p>	<p>졸업대상자 유급 예외조건 추가</p>
제52조(후기졸업)	<p>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기졸업 할 수 있다.</p> <p>1.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<u>20학점 이내인 자</u></p> <p>2.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미 취득으</p>	<p>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기졸업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</u></p> <p>2.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미 취득으</p>	<p>졸업학점 미달자에 대한 기준 수정</p>

	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 3. 9월(후기) 입학자 ② ~ ⑥ <생략>	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 3. 9월(후기) 입학자 ② ~ ⑥ <생략>	
제57조(학적부 정정)	<p>① 다음 각 호의 1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<u>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원</u>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명</li> <li>2. <u>생년월일</u></li> <li>3. 주소지 변경</li> <li>4. 기타</li> </ol> <p>② 정정이 승인된 사항은 즉시 정정하고 정정자의 날인과 정정 연월일을 기록한다.</p> <p>③ 신설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1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<u>학적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</u>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명</li> <li>2. <u>주민등록번호</u></li> <li>3. 주소지 변경</li> <li>4. 기타</li> </ol> <p>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 <u>외국인유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이 학적부와 상이하여 정정이 필요한 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성명(영문명)</u></li> <li>2. <u>외국인등록번호</u></li> <li>3. <u>주소지 변경</u></li> <li>4. <u>기타</u></li> </ol>	학적부정정 신청사항 변경 및 외국인유학생 학적부정정관련 내용 추가